#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녀성의 인격, 인신에 대한 법적보호

김명목

## 1. 인격, 인신에서의 녀성권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기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면 사람으로서의 값있는 생활을 한다고 말할수 없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6권 479폐지)

지금 지구상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 33억명에 달하는 녀성들이 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격, 인신에서 녀성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것이다.

인격, 인신에서 녀성권리를 보장한다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인격과 인신에 대한 불가침권을 부여하고 그의 실질적인 행사를 법적으로 담보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격이란 사람이 갖추고있는 사회적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말한다. 녀성에게 인격에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것은 사회적인간으로서 녀성이 지니고있는 품격, 다시말하여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녀성의 존엄과 명예, 자격을 지키고 존중받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신이란 말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의 몸 다시말하여 사람의 신체 혹은 육체를 이르는 말이다. 너성에게 인신에서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할 때 그것은 너성의 생명과 신체를 보 호하고 존중받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것을 말한다.

녀성에게 인격과 인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것은 녀성이 사회적존재로서 자주 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오랜 세월 인신적예속과 멸시를 받으며 시달려온 녀성들에게 있어서 인격과 인신의 불가침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받는것은 인간으로서의 참된 삶을 누려나가기 위한 근 본요구이다.

착취사회에서 녀성들의 인격과 인신은 여지없이 짓밟혀왔다. 《만민평등》, 《민주주의》, 《인권존중》을 부르짖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의 인격, 인신은 무참히 유린당하고 그것 은 돈벌이수단으로, 성적쾌락의 도구로, 각종 폭력범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녀성들에게 인격과 인신에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의 실질적인 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것은 녀성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해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회적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해방후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세기를 두고 무지와 몽매속에 허덕이며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우리 조선녀 성들을 사회의 떳떳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녀성들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옹호보장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법들이 제정실시되였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녀성들의 인격, 인신에서의 권리는 법적으로 철저히 옹호보장되고있으며 조선녀성들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며 가정과 사회의 꽃, 혁명의 꽃으로 활짝 피여나 그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있다.

### 2. 공화국가족법에서 녀성의 인격, 인신에 대한 법적보호

가족법에서 녀성의 평등한 인격과 인신의 권리를 보호하며 담보하는것은 녀성의 인격 및 인신에 대한 법적보호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결혼의 당사자는 남성과 녀성이며 그들사이의 인격상의 평등한 권리는 결혼관계 다시말 하여 남편과 안해사이의 재산적 및 인격적관계를 직접 규제하는 가족법에서부터 철저히 보호 되고 보장되여야 한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혈육들이 모여 인간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은 통일적인 과정속에서 진행되며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다. 가정생활에서 녀성들의 인격과 인신의 권리를 옹호보장하는것은 사회적으로 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이며 기초라고 말할수 있다.

가정에서 녀성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 부부의 일방 당사자로서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인 격적관계에 놓여야 하며 그러자면 가족법적으로 부부의 동등한 지위를 고착시키고 담보하 여야 한다. 아무리 평등이라는 원칙이 있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가족법규범에서 부부의 법 적지위를 평등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보장할수 없으며 담보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부부의 모든 법률관계를 호상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인격적관계로 규제하는것을 통하여 인격, 인신에서의 녀성들의 권리를 최대로 보호하며 보장하고있다.

공화국가족법은 우선 결혼후 남편과 안해가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도록 함으로써 부부가 인격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담보한다.

부부의 성에 관한 문제는 결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효과의 하나로서 배우자 특히는 녀성의 성이 변경되는것과 관련하여 가족법의 규제를 받는다.

결혼과 관련하여 본래의 자기 성을 변경시키는 문제는 매개 민족의 전통적인 관습이 서로 같지 않은데로부터 각이하게 규제되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결혼과 함께 부부가 같은 성을 쓴다. 이 경우에 녀성은 본래의 자기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오래동안 굳어진 민족적풍습에 따르는것 이라 할지라도 남성에 대한 녀성의 종속관계를 고착시킨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은 같은 혈통을 나타내는 호칭이다.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성을 귀중히 여겨왔다.

공화국가족법 제17조에서는 결혼후에도 남편과 함께 안해는 각기 자기의 성과 이름

을 그대로 가진다는것을 규제함으로써 부부 특히 녀성들의 인격적지위를 남자들과 동등 하게 보장하고있다. 이와 같은 법적규제는 녀성들의 인격을 옹호보장하며 우리 민족의 민 족적풍습에도 맞는것이다.

공화국가족법은 또한 남편과 안해가 가정생활에서 평등권을 지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동등한 인격적지위를 담보한다.

가정생활은 부부를 주축으로,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것만큼 부부에게는 가정생활에서 인격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여야 한다. 만약 가정에서 배우자 어느 일방에게만 특권이 부여되고 다른 일방에게는 의무만 부여된다면 그것은 벌써 부부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부부의 불평등한 관계는 가정을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관계로 이루어질수 없게 하고 화목하고 단란한 보금자리로 꾸려나갈수 없게 하며 녀성들의 인격을 침해한다.

부부관계를 혁명동지관계로 되게 하며 녀성들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존중받는데서 동등한 법적권리와 의무를 지니도록하는것이 중요하다.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남편과 안해로서의 자격을 호상 인정하는것과 동시에 서로의 존엄과 명예,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의사와 요구까지도 귀중히 여기며 존중해준다는것을 의미한다.

공화국가족법 제18조에서는 남편과 안해는 가정생활에서 똑같은 권리를 행사한다는데 대하여 다시말하여 남편과 안해의 평등권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부부가 가정생활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존중받을수 있도록 하는 법적담보로 된다.

남편과 안해는 서로 인격을 존중받을 동등한 권리와 함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여 야 할 똑같은 의무를 지니며 그 권리와 의무를 다같이 성실하게 리행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존중은 직업의 선택과 로동생활, 사회정치생활에까지 연장되여 야 하며 이렇게 될 때라야 인격에 대한 실질적인 존중으로 될수 있다.

공화국가족법에서는 남편과 안해는 각기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다는데 대하여서도 규제함으로써 녀성들이 가정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 운명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인격을 존중받을수 있는 위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고있다.

공화국가족법은 또한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일방을 대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인간생활은 사회관계속에서 진행된다. 가정생활과정에는 종종 부부의 어느 일방이 맺은 사회관계, 제3자와의 법률관계가 다른 일방앞에 제기되여 그가 대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부부일방은 가정생활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배우자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경우 위임대리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혼으로 부부는 인격적관계는 물론 재산적관계에이르기까지 완전히 하나로 결합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뿐만아니라 공화국가족법에서는 신체상결함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부부일방의 후견인은 배우자라고 규제하고있다. 따라서부부는 가정생활과 결부된 제3자와의 관계에서 호상 대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부부사이의 대리권행사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꼭같은것이 아니였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는 부부가 가정생활에서 인격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였다. 남존녀비사상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여 남편은 안해를 대신하여 3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자로 나설수 있었으나 안해에게는 남편을 대리할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오늘날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나라들에서 녀성들의 가정적 및 사회적지위가 눈에 뜨이게 개선되고있지만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아직까지도 력사적 및 사회적, 종교적근원으로 하여 녀성들이 가정에서 불평등을 강요당하고있다.

#### 3. 공화국형법에서 녀성의 인격, 인신에 대한 법적보호

녀성의 인격, 인신에 대한 법적보호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형법분야에서 녀성의 인격과 인신보호의 법적담보를 마련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형법은 국가사회제도와 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와의 투쟁을 목적으로 국 가가 제정한 범죄와 형벌을 규제한 법이다.

공화국형법은 사회주의적인 사회관계를 침해하는 각이한 범죄형태들과 그에 따르는 형사법적제재를 규제하면서 녀성들의 인격, 인신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한 국가적제재인 형벌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녀성인권보장의 위력한 법적담보를 마 련하고있다.

공화국형법에서는 우선 녀성들을 매매와 유괴, 매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담보 를 마련하고있다.

너성들에 대한 매매는 그들의 인격과 인신을 여지없이 짓밟는 낡은 사회의 악습이다. 오늘 모든 나라들에서 인신매매 그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녀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있다. 현대문명을 자랑하는 21세기에도 녀성들이 현대 판노예상인들에 의하여 상품처럼 팔리우고있는것은 최대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946년에 발포된 남녀평등권법령에서 중세기적봉건관계의 유습인 녀성들에 대한 매매의 금지가 선포되였으며 녀성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녀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너성들에 대한 유괴, 매음행위는 너성들의 육체를 상품화하고 녀성들을 성적쾌락의 도구로 삼고있는 부패타락한 부르죠아생활양식으로부터 파생된것으로서 사회주의사회에 서는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공화국형법에서는 녀성들의 인격과 인신에 대한 극단한 침해인 유괴나 매음과 같은 행위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유괴죄와 매음죄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제1462호로 주체105(2016)년 12월 22일 수정보충되여 주체106(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현행공화국형법에서는 유괴, 매음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형사법적제재를 적용할것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녀성들의 인격과 인신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 주며 인민정권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녀성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철저히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그와의 법적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위력한 법적무기를 마련하고있다.

공화국형법에서는 또한 녀성들을 성적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고있다. 녀성들의 인격, 인신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그들을 성 적침해로부터 보호하는것이다.

너성에 대한 성적침해는 일반적으로 강간, 륜간행위로 나타난다. 강간이나 륜간은 너성의 성에 대한 강제적인 침해행위로서 너성들의 인격을 극도로 유린하고 그들의 성적불가침권을 침해하며 사회의 건전한 인륜도덕을 말살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공화국형법에서는 녀성에 대한 강간이나 륜간행위를 녀성의 성적불가침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범죄로 규제하고 해당한 형벌을 지우도록 하고있다. 이것은 녀성의 인격, 인신 상의 침해를 막고 녀성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에서 차지하고있는 녀성들의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법적으로 담보한다.

너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법적 및 도덕적의무이며 그들을 어떻게 내세워주는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의 문명정도를 규정짓는 하나의 기준으로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른바 《민주주의》간판밑에 녀성인권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있지만 그것은 한갖 기만이며 허울일뿐이다. 녀성을 인간이 아니라 한갖 상품으로 여 기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돈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는 것은 필연적이다.

공화국형법에서는 또한 녀성들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고있다. 오늘날 녀성들이 가정폭행을 비롯하여 각종 폭력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는것은 세계 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심각한 사회적문제의 하나이다. 녀성에 대한 폭행은 녀성의 인격, 인신에 대한 불가침권을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2017년 11월 22일 유엔의 주최밑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세계녀성들의 불우한 처지와 관련한 조사자료가 발표되였다. 그에 의하면 녀성 3명당 1명이상이 폭력의 희생물로 되고있으며 7억 5 000만명은 18살도 되기 전에 결혼을 강요당하였다고 한다. 2017년 11월 25일 세계폭행금지의 날을 맞으며 뛰르끼예의 이스딴불과 이딸리아의 로마를 비롯한 여러도시들에서 진행된 집회와 시위들에서 녀성들은 녀성폭력행위가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데 대해 항의를 표시하면서 그것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녀성에 대한 폭행은 녀성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게 하는것으로서 마땅히 법적으로 철저히 금지시켜야 한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폭행을 발생시킬수 있는 사회적근원이 없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온 나라가 하나의 사회주의대가정이 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고있다.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며 동지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전설들이 창조되고있다.

특히 백두산절세위인들에 의하여 녀성존중의 새로운 력사가 창조된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에 녀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우는 사회적기풍이 확립되고 녀성들이 가정과 사회의 꽃, 혁명의 꽃으로 활짝 피여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자본주의법과는 달리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 성을 옳바로 인식하고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양하는 교양자적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온갖 형태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이다. 공화국형법에서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자에게는 해당한 형벌을 적용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이 조문은 녀성에 대한 폭행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행에 대하여 적용되는것으로서 녀성들에 대한 폭행을 철저히 막도록 근로자들을 적극 교양하고 녀성들에 대한 폭행범죄를 미연에 철저히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녀성의 인격과 인신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실천적인 의의를 가진다.

### 4. 기라 부문법에서 녀성의 인격, 인신에 대한 법적보호

너성들의 인격, 인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할데 대한 요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일관하게 구현되여 실현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각이한 사회생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기타 모든 부문법들에서 너성들의 인격, 인신보호의 법적담보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

공화국녀성권리보장법에서는 녀성의 인격, 인신보호의 규범들을 빠짐없이 법화하고있다.

공화국녀성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종합체계화하여 법화하고있다.

녀성권리보장법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의 권리와함께 특히 녀성의 인격과 인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법화하고있다. 그가운데서 녀성권리보장법이 규제하고있는 녀성의 건강, 생명의 불가침권에 대한 규제는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녀성의 생명과 건강의 불가침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녀성이라는 리유로 하여 생명과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녀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는 갓난 녀자아이를 죽이거나 딸을 낳은 녀성, 임신 한 녀성. 앓고있는 녀성. 녀성장애자. 년로한 녀성을 학대. 괄시하는것 등으로 표현되다.

아직도 세계 각지에서는 녀성의 존엄과 명예가 유린당하고 녀성들을 천시하다 못해 사회적으로 녀성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침해하는 비극이 초래되고있다.

초음파로 태아의 성별을 검사하고 인공류산을 하거나 녀자애를 질식시켜 죽이는 현 상이 만연되여 인구수에서 남녀비례가 심히 파괴되고있다고 한다.

공화국녀성권리보장법 제38조에서는 녀성이라는것을 리유로 하는 온갖 형태의 침해를 철저히 금지함으로써 녀성들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대한 확고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고있다.

이외에도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인민보건법, 사회주의로동법 등 모든 법들에서 너성차별을 철저히 금지하고 임신한 녀성들과 앓고있는 녀성, 녀성장애자, 년로한 녀성을 비롯한 모든 녀성들에게 생명과 건강의 불가침권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참으로 녀성들의 인격과 인신보호의 권리는 녀성들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워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가장 철저히 담보되고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공민적의무와 책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